

朝鮮後期の 郷吏集團과 탈춤의 演行

—朝鮮後期 邑權의 運營原理와 邑의 祭儀—

李 勛 相

I. 머리말

II. 朝鮮後期 탈춤의 演行과 主宰集團

III. 朝鮮後期 邑權의 運營原理와 邑의 祭儀

IV. 朝鮮後期 탈춤의 演行 背景과

社會的 機能

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후기 이후 탈춤의 성행은 민중의 성장과 함께 민중예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징표의 하나로서 이해되어 왔다. 지배계층인 양반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풍자는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한 유력한 증거의 하나였다. 주로 民俗學이나 韓國文學 연구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이 같은 立論은¹⁾ 한국사 연구자들에게도 별다른 비판없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²⁾

- 1) 이와 관련한 개별논문들 지면이 제한된 이 글에서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다. 최근 가면극 연구사를 쓴 田耕旭氏는 탈춤과 관련된 연구업적과 발굴자료를 모두 230편 이상 제시하였으며(田耕旭, 「가면극 연구사」『韓國學報』40, 1985년 가을호), 그 후 출간된 성과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방대한 양이 될 것이다. 이 중에는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의 경향이나 가설 등을 비교적 잘 摘示해 준다고 생각되는 논문 등으로 한정하여 살펴볼 수 밖에 없다. 이 점 미리 양해를 구한다.
- 2) 한국사연구자들은 주재집단에 대한 별다른 검토없이 민중연극 또는 庶民文化라는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 한국민중사연구회編, 《한국민중사》Ⅱ (폴빛, 1986), p. 35.

○ 鄭求福, 「實學과 庶民文化」《韓國史研究入門》2권 (한국사연구회, 1987), pp. 381—382.

한편 북한의 학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탈춤을 인민들이 집체적으로 창작한 인민적 작품이라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과 어긋난다.

○ 전장석, 「탈놀이」《조선의 민속놀이》(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민속학연구실; 푸른숲, 1988. 12), pp. 25~33.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編, 《조선문화사》; (오월, 1988. 11), pp. 494~496.

그러나 현지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각 촌의 세시행사로써 정착-전승되어온 탈춤의 대부분은 바로 鄕吏集團이 주체가 되어 이를 主宰하고 演行한 것으로 나타난다.³⁾ 요컨대 조선후기 이후 탈춤은 천민

- 3) 탈춤의 演行집단에 대한 현지조사는 일제시대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 성과의 대부분은 조선시대의 사회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없이 이루어졌고, 더우기 이에 대한 문헌기록도 최소한 때문에 이러한 현지조사만을 토대로 조선시대의 상황을 소급-추론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구한말 이후 일제의 새로운 통치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탈춤을 주재한 鄕吏集團의 鄕村社會에서의 역할이나 지위는 크게 변했다. 그 결과 탈춤의 演行은 점차 단절되어가고 演戲者들의 구성 성분도 크게 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지조사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그 대부분이 조사 당시의 실정을 토대로 조선시대의 상황을 소급-추리함으로써 상당한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다만 일부조사는 매우 귀중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다음의 것이 이에 해당한다.

○秋葉隆, 「山臺戲」『日本民俗學のためそ』, 柳田國男古稀記念論文集 9-民間傳承の會一(1948.9); 《朝鮮民俗誌》(東京三六書院, 1954.3); 徐淵昊譯, 《山臺탈놀이》(열화당, 1987.1)

○村山智順, 「民衆娯樂としての鳳山假面劇」『朝鮮』261 (1937.2); 徐淵昊譯, 《黃海道 탈놀이》(열화당, 1988.3)

○吳晴, 「假面劇 鳳山탈 脚本」『朝鮮總督府官房文書課』一具滋均筆寫本(一梧文庫); 徐淵昊, 위의 책.

일제시대의 조사를 정리한 위의 기록에는 鄕吏集團이 바로 탈춤의 演行을 주도한 주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쏟아져 나온 술한 연구들이 한결같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것은 의아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 점은 판소리의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당대 사회구조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종래의 연구들이 탈춤의 기원의 해명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논의의 초점을 흐려 놓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같은 편향은 徐大錫의 「탈춤의 기원」에(《城山張德順先生停年退任紀念論叢》—韓國文學史의 爭點—[集文堂, 1987.8]) 집성되어 '있는 연구정향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제 탈춤과 관련한 연구는 무엇보다도 형성과 발전에 초점을 두어 그 역사적 位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할 것이라 믿는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조선후기 탈춤의 演行과 관련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할애하여야 한다고 믿는 것은 먼저 이 시기 탈춤의 발전이 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천민신분의 유랑 예능집단의 연회는 그 이전부터 있어 온 반면, 현재와 같은 양식의 탈춤이 촌을 중심으로 성립-정착한 사실은 분명 조선후기의 새로운 변화로서 주목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촌이나 군사행정구역의 탈춤의 발전과정에 있어 상인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것

신분의 유랑예능인이나 농민이 연희자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郷吏들이 主宰하여 演行한 것이다. 그런데 이 집단은 신분적인 연원이나 위세에 있어 평민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므로 이른바 민중의 범주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집단이 壬戌農民抗爭에서 東學農民運動에 이르는 일련의 農民抗爭의 시기에 농민들의 주요 공격대상이 된 점을 통하여도 분명해진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해 볼 때, 郷吏集團이 主宰하여 전승하고 나아가 직접 演戲者가 되어 演行한 탈춤을 민중예술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연구자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별달리 주목하지 않은 채, 민중예술의 발전이라는 도식을 세워 온 것이다. 요컨대 탈춤과 관련한 종래의 가설은 이를 주재하고 전승한 집단의 位相이나 당대 사회구조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없이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다.⁴⁾

으로 趙東一의 「조선후기의 가면극과 민중의식의 성장」을(『創作과 批評』 24 [1972]); 『韓國假面劇의 美學』 [한국일보사, 1975. 5]; 『탈춤의 歷史와 原理』, [弘盛社, 1979] 들 수 있다. 그러나 상업의 중심지에서 천민예능집단이 부정기적으로 연행한 사례보다 邑에 정착-전승한 탈춤이 훨씬 두드러진 발전을 보여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우기 조선후기 이후 邑을 중심으로 연행된 탈춤은 定期市와는 관계없이 邑의 세시행사로서 전승되어 왔고, 더우기 商人들은 郷吏集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분적으로 구분될 뿐 아니라 일정 위계서열관계에 놓여 있던 것이 당대의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邑에 현재와 같은 양식의 탈춤이 성립-정착함에 있어서 상인들의 역할을 향리 집단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想定-강조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漕倉이 있고 場市도 함께 선 鰲山의 경우에도 五廣大 연희의 주체는 바로 이 곳의 官屬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 4) 이와 관련하여 民俗劇의 傳承集團에 주목한 林在海氏의 글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林在海氏는 탈춤의 내용 전개의 차이를 傳承集團의 사회적 성격의 차이에 근거를 두어 설명하였다. — 林在海, 「民俗劇의 傳承集團과 영감 할미의 싸움」 『女性問題研究』 13 (曉星女大 韓國女性問題研究所, 1984); 林在海編, 《한국의 민속예술》 (文學과 知性社, 1988. 8).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견해이지만 各 邑에서 演行한 탈춤의 전승 집단을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인 두배패로 규정한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郷吏 조직이나 이들의 존재 형태는 이러한 개념에 부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우기 극 중 내용과 관련하여 할미-영감의 싸움과 그 결말 양상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탈춤은 부계상속의 가부장적 성격을 전승 집단이 가졌기 때문에 할미의 죽음으로 종결하고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데, 鰲山五廣大의 경우 영감이 죽기 때문에 내용

이제 문제의 해결방향은 탈춤을 주재한 집단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역사적 의의를 새롭게 부각하는데 있다고 믿는다. 조선 후기 鄕吏集團의 존재형태와 의식구조를 밝히려는 일련의 작업의 하나로서 탈춤이 지니는 역사적 중요성과 관련하여 鄕吏集團이 탈춤을 각 지역에 정착·전승시킨 사실을 주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탈춤의 主宰集團을 검토하려 한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탈춤의 演行-전승 양상을 조선후기 향리제도의 특성과 관련하여 그 상관관계를 논의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조선후기 탈춤의 주요 특징의 하나가 邑治를 중심으로 발전·전승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鄕吏들이 주재하는 邑의 祭儀와의 상관성도 살피려 했다.⁵⁾ 祭儀가 鄕村社會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다는 논리 위에 鄕吏集團의 지위 및 역할의 변화를 추

의 차이와 전승 집단 간의 상관관계를 저자가 설정한 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믿는다.

이와 더불어 조선후기 탈춤의 발전을 공동체 의식의 분화라는 맥락 위에서 이해한 채희완氏の 견해도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채희완, 「공동체 의식의 분화와 탈춤구조」 『세계의 文學』 15 (1980년, 봄호); 林在海編, 위의 책. 무엇보다도 지적해야 할 문제점은 邑에 世居하면서 탈춤의 演行을 주재한 鄕吏集團은, 채희완氏의 지적과는 달리 개방적인 구조를 갖지 않았으며 오히려 타 신분에 대하여 강한 배타적 응집성을 가진 신분집단이라는 점이다. 이 집단의 내부구조는 조선후기 이후 家系分化和 더불어 증충적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는 끊임없이 상충한 것이 조선후기의 상황이었다. 요컨대 이 집단은 채희완氏가 상정한 공동체의 범주에는 결코 부합될 수 없는 것이다.

- 5) 이와 관련하여 趙東一氏의 假面劇의 발전에 대한 假說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趙東一氏는 조선후기 이후 상인층 등의 후원하에 都市假面劇이 성립된 것으로 설명하여 이 시기의 주요변화로써 農村假面劇에서 都市假面劇으로의 발전이라는 도식을 설정하고 있다(趙東一, 위의 글). 이러한 가설은 탈춤의 발전 및 성격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 먼저 저자가 상정한 都市라는 개념이 조선후기 사회를 설명하는데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한마디로, 조선후기 이후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都市化로의 발전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이며, 이 점은 탈춤이 演行된 邑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부합된다. 다시 말해서 탈춤이 演行된 邑은 郡縣의 格에 따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官’을 기본 단위로 한 거의 동질적인 行政 중심지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宋俊浩의 「南原地方을 例로 하여 본 朝鮮時代 鄕村社會의 構造와 性

적함으로써 탈춤이 정착-발전한 사회적 배경을 밝히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士族 중심의 鄉村社會에서 郷吏集團이 다른 신분집단과의 사회적 관계 및 그 변화에 대응하여 온 행위 유형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작업은 郷吏集團의 지위 및 역할을 이해하는데 邑의 祭儀를 중심으로 편제된 郡縣 단위의 일상생활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나아가 다양한 변화 속에서 郷吏制度가 장기간 존속한 사실에도 주목하여 그 요인의 하나로써 郷吏集團과 다른 身分集團과의 사회적 관계 및 郷吏集團에 대한 조선왕조의 통치 방식, 이들 양자 간의 상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II. 朝鮮後期 탈춤의 演行과 主宰集團

高宗 30년(1893) 경상도 固城의 府使로 부임한 吳玄默은 음력 12월 30일 除夕을 맞아 邑內에서 벌어진 세시행사를 목격하고 이 광경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내가) 風雲堂을 돌아다 보니 아전의 무리들이 儼樂을 갖추고 遊戲를 하고 있다. 이것이 무어냐고 물으니 '해마다 치르는 관례입니다'라고 한다. (中略) 관아에 돌아왔을 때는 날이 이미 어두웠다. 조금 있으니 儼戲輩들이 쟁을 치고 북을 두드리며 필쩍 뛰어오르는 등 온통 시끄러이 떠들며 일제히 官衙의 마당으로 들

格」이(『大邱史學』 30 [1986. 12]; 《朝鮮社會史研究》[一潮閣, 1987. 8], pp. 277—281) 참조된다. 두번째로 지적해야 할 문제점은 農村假面劇에서 都市假面劇으로의 발전이라는 가설을 통하여 農村과 都市를 대비시키는데 탈춤이 演行된 邑조차 광의의 의미로는 農村社會였고, 더우기 邑에서 演行된 탈춤조차 세시행사의 범주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固城五廣大과 咸安五廣大에 관한 조선말기의 문헌기록에서도 분명히 입증된다. 조선후기 이후 탈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존속하여 온 邑의 祭儀 및 雜戲를 토대로 현재와 같은 양식으로 발전-정착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별다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으로 나누어져 공존한 것이며, 이 중에서 탈춤이 보다 세련되고 발전한 邑의 경우 천민 예능집단의 演行이 분명 큰 영향력을 주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農村假面劇에서 都市假面劇으로의 발전이라는 도식은 타당한 것일 수 없다.

어온다. 마당 가운데의 石臺 위에는 미리 큰 불을 마련해 놓았는데, 마치 대낮처럼 밝다. 악기를 마구 두들겨 어지럽고 시끄러워 사람의 말을 구분하기 어렵다. 月顯과 大面, 老姑優와 兩班倡의 기이하고 괴상한 모양의 무리들이 순서대로 번갈아가며 나와, 서로 바라보며 회롱하고 혹은 미쳐 날뛰며 소란스럽게 떠든다거나 혹은 천천히 춤을 춘다. 이같이 하기를 오랫동안 하고 그쳤다. 이 곳의 雜戲는 威安의 것과 대략 비슷하지만, 익살은 보다 나운데 복색의 꾸밈은 다소 떨어졌다.⁶⁾

이 때 吳弘默이 목격한 것은 風雲堂이라는 邑內의 祭堂에서 행한 祭儀와 함께 관아에서 演行한 雜戲인데, 이 기록 속에서 흥미로운 것은 어둠이 깔리면서 관아에 햇불을 켜놓고 벌인 탈판이다. 吳弘默이 본 탈춤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固城五廣大이며 그 내용도 일치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사실은 風雲堂에서 祭祀를 올리고 이어 탈춤을 논 연희자들이 吏輩로 지적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吳弘默의 또 다른 기록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된다.

(나는) 가까이 있는 風雲堂의 내력에 대하여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그 堂은 松樹洞의 대나무 숲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와 지붕의 세칸 건물로서 앞에는 나무 마루로 되어 있다. 왼쪽 앞에는 풀로 엮은 세칸 집이 있는데 이곳은 守直人이 사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예로부터 巫覡이 서로 바꾸어가며 享祀를 지내는데 매해 단오날과 선달 그믐날에는 으레히 이곳 固城 官衙의 作廳의 公兄으로부터 時任의 各房 鄉吏들에 이르기까지 風雲堂에 祭物을 갖추어 놓고, 제사를 올릴 때에는 무리들이 풍악을 울리면서 일제히 나아간다는 것이다.⁷⁾

- 6) 回見風雲堂 諸吏輩 具雜樂遊戲 問是 歲時年例云 (中略) 遷衙時 已迫昏 少頃 雜戲輩 鳴鈸伐鼓 踴躍轟闐 齊入官場 場中石臺上 預設炬火 明若白晝 而金革亂聒 人語難分 月顯 大面 老姑優 兩班倡 奇形怪容之流 頭頭迭出 面面相譁 或狂叫 或慢舞 如是數食頃而止 蓋其雜戲 與威安略相似 而滑稽較勝 服飾較劣 (吳弘默, 《固城叢錄》 高宗 30년 12월 30일, 《韓國地方史資料叢書》 18 [驪江出版社, 1987. 3])
- 7) 從容問 在傍以風雲堂來歷 蓋堂在松樹洞竹林間 瓦屋三間 前以板廳 左前草舍三間即 守直人所居 自來以巫覡遞代舉行享祀 每歲端陽除夕 例自本府作廳公兄及時任各房 排備祭物 設奠時 衆樂齊進 (吳弘默, 위의 책, 高宗 30년 3월 1일)

다시 말해서 고성 의 風雲堂은 戶長 및 吏房 등을 首班으로 한 作廳의 公兄과 時任 各房 鄉吏들이 단오날과 선달 그믐날에 제사를 지내는 祭堂이었다. 요컨대 風雲堂은 이 지역 鄉吏集團이 자신들의 안녕을 비는 祭堂이며, 固城五廣大는 바로 이 風雲堂에서 제사를 마친 鄉吏들이 祭儀 행사의 하나로서 官아에서 演行한 탈춤인 것이다.⁸⁾

한편 吳宥默은 固城五廣大 외에 咸安에서도 탈춤을 구경하고 이에 대한 기록도 남겼다. 그는 高宗 26년(1889)과 28년(1891)의 12월 30일, 즉 除夕에 이를 보았다. 이 때 놀이는 官衙의 광장에서 演行한 것으로 적고 있다. 咸安의 탈춤은 固城과 마찬가지로 五廣大類라 생각되는데, 이 지역의 탈춤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나아가 五廣大에 관한 문헌 기록도 전하는 것이 없으므로 이것 또한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후 吳宥默은 固城五廣大를 보면서 固城의 것이 咸安과 비교할 때 滑稽는 뛰어나지만 服飾은 떨어진다고 양자의 차이를 지적하였다. 咸安의 탈춤에 관한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上略) 日暮燭舉閉門後 忽聞外有衆人喧聒之聲 忽然 燃炬紗籠 燐煌庭除 余招通引問之 所謂官屬輩正朝問安云也 霎頃次第問安後 忽有鼓角鉦笛之聲 兒童數十名 呼應而入 繼以壯丁幾數十名 各執所長張樂於廣場 金革相邊 踴躍跌先 就中一大漢 面裏傀儡 東閃西忽 乍俯乍仰 或慢聲 作倨傲之態 或佯仆作中風之樣 如牆觀者 莫不擗腹失聲 又有幾箇妙童 直立於大人肩 上 舉手翻翻 舞進無退 俗所謂埋鬼戲也 余以錢十兩・白紙二束・白米三斗・北魚一夫・大口三尾・白酒一盆 帖下分喫後 又入內衙 一場鳴打 轉向六廳 亦然 此蓋年例而辟退癘魔云

(《咸安叢瑣錄》, 高宗 26년 12월 30일)

● 是夕 諸官屬 重徒後 儼隊 一場鬧聒 概依已例施給 又細木一疋
(위의 책, 高宗 28년 12월 30일)

- 8) 한편 風雲堂에서는, 除夕이나 端午와 같은 세시행사에 告祀를 올리는 외에도 都書員이 巡營에 災滅 관계로 磨勘하러 갈 때 관례대로 致誠을 드리는 등이 祭堂은 鄉吏集團의 이해 및 안녕을 기원하는 곳으로 나타난다(《固城叢瑣錄》, 高宗 30년 9월 23일). 이렇듯 鄉吏들의 안녕을 비는 鄉吏 중심의 祭堂이 각 邑마다 존재한 사실은 필자의 현지조사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한편 光陽의 경우, 邑의 府君堂이 이 같은 유형의 祭堂으로서 이에 대한 문헌기록도 찾아진다(《作廳廳錄》 〈府君祭 祭物單子〉, 奎章閣一淸구번호: 12528). 또 다른 사례로서 주목되는 것은 醴泉邑에서 演行되어 온 無言假面劇인 청단 놀음도 바로 醴泉 邑內的 東本洞에 있는 鄉吏들의 祭堂에 告祀를 지낸 후 거행된 것이며, 이 모든 절차가 바로 鄉吏集團의 주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진다(1988.8.7. 필자의 현지조사). 지방의 官屬들이 이같이 그들 집단의 안녕과 관련하여 특정 祭堂의 운영을 주관한 사례는 中央의 官屬에게도 보편적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中央의 各 官衙마다 존재한 府君堂이 바로 이것이다(李裕元, 《林下筆記》 16 〈府君堂〉).

이렇듯 향리집단이 탈춤을 연희한 양상은 이것이 固城에만 국한된 특수 사례가 아니며 다른 지역에서 탈춤을 주재한 부류들의 신분도 이와 일치한다. 먼저 東萊野遊의 경우, 鄉吏들의 耆老所와 같은 조직인 耆英會가 그 연희를 주재한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⁹⁾ 한편 일제시대의 현장조사기록이 남아있는 鳳山탈춤의 경우에도 탈춤의 연희자가 鄉吏라는 사실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鳳山탈은 元來로 鳳山吏屬들이 子子孫孫 世襲적으로 出演하여 오던 것으로서 그 中 醉談, 老僧, 初目 등의 役割은 吏屬 中에도 가장 重要한 人物이 하고 上佐, 少巫는 通引 등의 年幼者로써 充當시켰는데 現今 이 탈놀이로 主宰하고 있는 李東碧氏와 같은 이는 그의 二十代 先祖로부터 거의 世襲적으로 初目の 역할을 擔當하여 왔다고 한다.¹⁰⁾

요컨대 이 報告는 탈춤을 직접 연희하고 주재한 주체가 바로 해당 지역의 향리집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재확인시켜 준다.

9) 沈雨晨編著, 《韓國民俗劇》(創作과 批評社, 1975. 5), p. 27. 및 康龍權, 《野遊·五廣大》(형설출판사, 1977), p. 74. —한편 沈雨晨氏는 ‘水營野遊稷나 동래들놀음을 이끌어온 耆英會 등은 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양반 내지는 신흥상인계층의 모임으로서 이들이 이 지역 대동놀음인 들놀음을 주도하여 왔다’고 하면서 이를 민중놀이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耆英會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耆英會는, 作廳의 退任者로 구성된 大同會와 武廳의 退任者로 구성된 萬同會의 회원이 구한말에 이르러 합하여 만든 것이다(東萊耆英會, 《東萊耆英會 140年史》[1984. 8], pp. 137—147). 요컨대 鄉吏들과 武校로 구성된 모임이며, 여기에서 東萊野遊의 演行을 주관한 것이다. 조선후기에 鄉吏나 武校 중에는 간혹 상거래에 관여한 인물도 있고, 또한 당시 상업활동은 이들 집단과의 긴밀한 연관 아래 이루어졌으나 각 개인은 소속 씨족의 신분에 의하여 신분이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집단의 구성원 중에 상업에 종사한 인물이 있더라도 演行의 주도집단이 상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를 양반 내지 신흥상인계층이라고 한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며, 탈춤의 演行을 주관한 주체는 바로 鄉吏集團이었다. 耆英會와 같은 조직은 다른 郡縣의 鄉吏社會에도 존재하였다. 이들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 李樹健, 「朝鮮朝 鄉吏의 一研究」 『文理大學報』 3 (嶺南大 文理科大學, 1974. 11)

○ 拙稿, 「朝鮮後期 慶州의 鄉吏와 安逸房」 『歷史學報』 107 (1985. 9)

10) 吳晴, 「假面劇 鳳山탈 脚本」 《黃海道 탈놀이》, p. 110.

한편 統營五廣大라든가 水營野遊, 또는 鶴山五廣大 등의 경우, 이들이 演行된 곳은 각기 統制營이나 左水營, 永登嶺이 설치된 군사행정구역이라는 점에서 固城이나 東萊, 鳳山과 같이 군현으로 편제된 곳과는 다르다. 그렇지만 이 지역 관아의 公役을 담당한 衙前 등도 세습과 신분의 면에서 군현의 鄉吏들과 동일하며, 統營이나 水營 또는 鶴山の 탈춤도 바로 이 지역 관아의 衙前이나 將校가 주체가 되어 연희되어 온 것이다.¹¹⁾ 이러한 사실은 특히 統營五廣大와 관련하여

統制使의 營門이 統營에 들어앉은 뒤부터 매해 설달 그믐날 統制使 東軒에 들어 밤늦게까지 매구(埋鬼)를 치고, 탈놀이를 하였다고 한다. 各 島에서 召集되어 水軍에 配置된 樂工들 30餘名을 勳員하여 28日頃부터 執事, 吏房 등의 監督下에 演習하고...¹²⁾

라는 口傳은 이 지역 탈춤도 衙前조직의 주도 아래 연희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駕山五廣大 역시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적할 수 있다. 駕山五廣大는 漕倉이 설치된 浦口에서 演戲하여 왔는데, 연희자는 漕倉의 업무를 담당한 하급 관속이라고 전해진다. 특히 演戲의 주체였다는 淸州 韓氏 家門은 漕

11) 統營五廣大의 경우, 처음에는 義興契가 다음에는 蘭社契가 주체하였다고 전한다(李杜鉉, 《韓國假面劇》[韓國假面劇研究會, 1973. 6], pp. 327—328). 이契를 구성한 부류들의 신분은 조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역시 東萊의 耆英會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鄉吏나 將校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리라 믿어진다. 이것은 樂工을 동원하고 執事, 吏房 등의 감독하에 연습하였다는 조사보고를 통하여도 뒷받침된다(李杜鉉, 위의 책, p. 328). 한편 水營의 경우 水營野遊契가 주도하여 왔는데 이 역시 耆英會와 동일한 성격을 지녔으리라 생각된다. 水營野遊의 유래와 관련하여 '水使의 部下들이 草溪의 대廣大를 본받아 演行했다'고 하는데(崔常壽, 「民俗劇」《慶尙南道誌》下 [1964. 9], p. 103), 여기에서 部下란 곧 水營의 官屬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鶴山五廣大의 演戲集團도 이와 유사한 신분이라 짐작된다. 統制營의 屬鎮인 永登嶺이 설치된 鶴山の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鎮의 吏屬들이 五廣大를 논 것으로 전해진다(鄭尙坤, 《오광대와 돌놀음연구》[集文堂, 1986. 1], p. 198). 이러한 상황은 左水營의 屬鎮인 釜山鎮의 野遊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된다.

12) 李杜鉉, 위의 책, p. 328.

倉과 관련한 직임을 대대로 세습하면서 이 지역에 300년 이상 世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¹³⁾ 이러한 특징은 다른 지역의 탈춤의 主宰集團의 경우와 동일한 것이다.

다만 楊州別山臺 만큼은 연희자가 관아의 雜役을 담당한 하급 官屬이라는 점에서 향리집단이 演戲者의 중심을 구성한 앞서의 사례와는 구분된다. 都中이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楊州別山臺를 계승하여 온 이들 하급 官屬은¹⁴⁾ 使令과 軍牢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이들은 향리집단과 신분적으로 위계서열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집단의 使令廳과 軍牢廳은 각기 作廳 및 武廳의 관할하에 운영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楊州別山臺의 演戲者가 하급 官屬이라 할지라도 그 演行은 이 지역 鄉吏集團의 주도적 역할이나 후원 아래 이루어졌다고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演行할 때 관아의 樂土廳까지 동원할 수 있던 사실은 鄉吏集團이 관여했음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¹⁵⁾

한편 鄉吏들의 주도적인 역할과 관련하여 탈춤이 현재와 같은 양식으로 성립되어 그 演行이 각 邑의 歲時행사로 정착된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는

13) 康龍權, 「駕山五廣大의 特性」, 『국어국문학』 55-57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2. 11), pp. 23-27.

14) 秋葉隆, 앞의 글, 徐淵昊譯, p. 114.

15) 任哲宰氏는 楊州別山臺가 아전들의 지원이 있었을 뿐 놀이는 천역부들이 중심이 되어 놀았다고 하고 있다(徐淵昊, 《山臺탈놀이》, p. 38). 이러한 전승은 역사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믿어지는데, 특히 이들이 都中이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탈춤을 演戲했으며, 나아가 官衙의 賤役을 담당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楊州別山臺의 演戲者는 분명 使令과 軍牢라고 짐작된다. 이들은 각기 독립된 집단을 구성하고 廳을 따로 운영하였는데, 이들이 속한 使令廳과 軍牢廳은 각기 作廳과 武廳의 통제 아래 있었다. 요컨대 이들 各廳의 구성원은 신분이 현저하게 달랐고 또한 종속관계에 있었던 것이다(《公文日錄》〈傳令各面任及牢令屯監〉, 《各司廳錄》 17, 哲宗 9년 3월 20일).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使令과 軍牢들이 楊州別山臺를 演行할 때 그들의 상급집단인 作廳이나 武廳의 관여없이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더우기 樂土廳까지 동원할 수 있는 사실로 미루어 이러한 추론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믿는다. 한편 鳳山탈춤이나 康翎탈춤의 演行에 천인 신분의 전문 예능 집단이 관여한 사실도 주목된다(전장식, 앞의 글, p. 30 및 徐淵昊, 《黃海道 탈놀이》, p. 36). 그렇더라도 이들의 역할은 잡이(악사)에 국한되어, 잡이와 演戲者 간에는 신분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한다. 그러므로 各邑의 演行에 다양한 신분 집단이 관여했더라도 그 주체는 당연히 향리집단을 꼽아야 하는 것이다.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문헌 기록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각 지역 탈춤의 유래와 관련된 다음 口傳을 미루어 그 윤곽만을 짐작해야 할 것 같다.

- 鳳山탈춤은 약 2백년 전까지는 木製의 탈을 사용하였던 것인데, 그 때 봉산의 吏屬 安草本(첫목의 와전인가?)의 1명이 全南의 어느 섬으로 유배당하였다가 귀향하였다. 그 후 그들은 탈춤상에 많은 개변을 가하였다. 탈을 紙탈로 한 것은 그중 현저한 개변이라 하겠다. 이 놀이의 연기는 安 이전에는 어떠한 계층의 사람이 하였는지 미상하나 安의 귀향 이후로는 이속들이 담당하였다.¹⁶⁾
- 양주에서 산대놀이가 시작되기는 약 3백 6,70년 전 임진왜란 후 양주골에 俞拓基란 牧使가 임한 당시 진어사점 목사로 부임하여 군사와 관민을 위로하기 위하여 한양에서 본산대를 초청한 것이 시초가 되어 매년 행사로 사월 초파일 오월 단오, 팔월 추석, 국경일, 기우제를 기하여 공연을 하였고...¹⁷⁾
- 五廣大를 직접 胞胎하여 分娩한 것은 草溪 밤다리(현 陝川郡 德谷面 粟旨市場)의 <대광대 De-kwangde>임은 事實이라고 할 수 있다. 左水營(東萊郡, 釜山, 東萊, 金海, 昌原(馬山), 統營의 五廣大及 野遊(야류라고 稱) 移入系統이 모두 草溪에서 源流를 시작하였다. 左水營은 약 60년 전에 草溪에 가서 있던 水營 사람이 보고 와서 창설한 것이며, 東萊군은 水營의 것을 본받아 약 60년 전에 시작한 것이고 釜山서는 약 40년 전에 東萊 水營의 것을 모방하여 시작하였다고 한다. 金海의 五廣大는 약 40년 전에 東萊 것을 참고하여 시작하였고 昌原은 약 40년 전에 草溪 대광대에 의하여 습득한 것이라 하며, 統營은 약 50년 전에 昌原제에 의하여 만든 것이라 한다. 晋州단은 약 50년 전에 宜寧郡 富林面 新反里 대광대에 의하여 創設되었다고 傳해 온다.¹⁸⁾

위에 摘出した 것은 이미 채록되어 널리 알려진 口傳 중의 일부이다. 이들을 토대로 하여 鳳山탈춤은 대체로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현전하는 양

16) 任哲宰, 「鳳山탈춤臺詞後記」 『국어국문학』 18 (1957), p. 221.

17) 金成大, 「양주별산대놀이가 걸어온 자취」 (沈雨晨編著, 앞의 책), p. 43.

한편 여기에 인용한 金成大的 이야기 중에는, 本山臺를 초청한 揚州牧使 俞拓基를 王亂 직후의 인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는 肅宗 17(1691)에서 英祖 43(1767)까지 생존하였고, 揚州牧使를 역임한 것은 英祖 在位 중이다. 탈춤의 유래와 관련하여 특정 守令과 연관지워 설명되는 경우는 드문 예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18) 宋錫夏, 「五廣大小考」 『朝鮮民俗』 1 (1933); 《韓國民俗考》 (日新社, 1960), p. 210.

식의 탈춤으로 성립되었고,¹⁹⁾ 揚州別山臺는 대체로 19세기 초·중엽에 만들어졌으리라는 추론이 제기되고 있다.²⁰⁾ 또한 野遊나 五廣大의 경우, 口傳을 그대로 따른다면 성립시기가 19세기 전으로 소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만 이들 口傳은 현재와 같은 양식의 탈춤이 한결같이 다른 지역의 演戲를 모방·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전파시기만을 일방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형성시기를 단정하는 작업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탈춤이 현재와 같은 양식으로 성립되어 각 지역의 年例행사로서 정착한 것이 조선후기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先行하는 다양한 놀이가 있어 이를 토대로 점차 현재와 같은 양식의 탈춤이 성립하였다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와 같은 양식의 固城五廣大가 演行된 조선후기에 앞서, 固城지역의 城隍祭에 百戲가 행하여진 사례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固城 지방 사람들은 해마다 5월 초하루에서 5일까지 모두 모여 두 무리로 나눈 다음, 祠堂의 神像을 메고 푸른 깃발을 세워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닌다. 사람들은 다투어 술과 잔을 내어 神像에 제사지내며, 儼人들은 모두 모여 온갖 놀이를 펼친다.²¹⁾

조선전기의 실태를 보여주는 이 기록은 固城에서는 단오날의 城隍祭에 百戲를 행하였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선후기 이후의 固城五廣大 또한 같은 단오날에 演行된 사실과 연관지워 생각해 본다면 현전하는 五廣大의 형식은 이러한 百戲를 토대로 조선후기 이후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²⁾ 그리고 다른 邑의 탈춤의 성립과정도 이와 비슷했을 것이라

19) 徐淵吳, 《黃海道 탈놀이》, p. 23.

20) 徐淵吳, 《山臺탈놀이》, p. 33.

21) 士人 常以五月一日至五日 相聚兩隊 載祠神像 豎綵旗 遍歷村間 人爭以酒饒祭之 儼人畢會 百戲具陳

《(新增東國輿地勝覽)》33 〈固城〉城隍祠

22) 본문의 引用文을 포함한 다음 事例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五月)五日丙戌(中略) 三班官屬 具樂器祭物 告祀于風雲堂 蓋此邑之自有風雲堂以來古俗云

믿어진다.

한편 꼭 거론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렇듯 탈춤이 각 邑에 현재와 같은 양식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流浪藝能 집단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 집단은 다양한 오락을 제공하였으며 그 가운데 탈춤도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세련된 演戲가 각 지역의 탈춤이 현재와 같은 양식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믿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慶南의 五廣大가 草溪의 大廣대패를 본받아 성립하였다는 口傳이나²³⁾ 揚州別山臺 등이 다른 山臺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이를 배워 시작한 것이라는 일련의 口傳 등은,²⁴⁾ 종래의 雜戲가 현존하는 양식의 탈춤으로 轉化하는 과정 중에 流浪藝能집단의 일정한 영향이 있던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²⁵⁾

(《固城叢錄》, 高宗 30년 5월 5일)

- (五月)五日端午也 三班 依例修祀于風雲堂

(위의 책, 高宗 31년 5월 5일)

이렇듯 각 邑에서 演行한 탈춤이 기존의 雜戲를 토대로 현재와 같은 양식으로 성립하였을 것이라는 가설은 다음 사례에서도 뒷받침될 수 있을 것 같다.

高城俗 郡祀堂 每月朔望 自官祭之 以錦綵作神假面 藏置堂中 自臘月念後 其神下降於邑人 着其假面 蹈舞出遊於衙內及邑村 家家迎而樂之 至正月望前 神還于堂 歲以爲常 盖儺神之類也

(洪錫謨, 《東國歲時記》12月 月內)

위의 기록은 조선후기 高城邑의 탈춤에 관한 것인데 官에서 제사를 지내고 邑人이 演行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 역시 鄉吏들이 주재한 것으로 믿어지는데 이 탈춤은 辟邪儀式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농후하다. 요컨대 高城邑의 탈춤은 固城邑에서 演行되는 五廣大와 같이 보다 세련된 형태의 탈춤으로 발전-정착하는 과정을 밟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면, 이 같은 사례는 탈춤의 발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후기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양식의 탈춤이 정착하기 전에 이미 각 邑에는 高城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다 先行하는 형식의 雜戲가 존재하여 이것이 별다른 변화없이 전승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固城이나 鳳山 등과 같이 탈춤이 보다 발전한 지역으로 각기 차이가 나타났으리라는 사실이다.

23) 崔常壽, 앞의 글, pp. 102—103.

24) 徐淵昊, 《山臺탈놀이》, p. 32의 인용문 참조.

25) 이와 관련하여 鄭尙朴氏는 가면극의 一方的 傳播說을 비판하고, 各地의 五廣

이들 전문 流浪 藝能집단은 兩班들의 입장에서 볼 때 風敎를 해치고 폐해를 주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이들의 雜戲를 금지하려 하였다.²⁶⁾ 그러나 금령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은 더욱 번성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이들이 演行하는 오락에 대한 요구나 관심이 점차 깊어진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도 각 지역 관아의 衙前이나 將校들의 관심은 더욱 각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조장하는 폐해와 관련하여 丁若鏞이 특별히 이들 집단을 거론한 다음 귀절은 이를 잘보여 준다.

俳優의 놀이, 꼭둑각시의 재주부림, 儼樂으로 施主를 청하는 일, 妖言으로 술수를 파는 자는 모두 금해야 한다.

남쪽 지방의 아전과 군교들은 사치와 방종이 습속이 되어 봄이나 여름 화창한

대는 藝人들이 노는 것을 보고 보다 정교화시켰다고 주장한다(鄭尙朴, 앞의 책, pp.41-42). 이러한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믿는다.

- 26) 《秋官志》〈掌禁部〉雜戲 및 《右捕盜廳臚錄》10冊〈癸丑九月十五日各江傳令〉참조. —한편 丁若鏞도 이들의 폐해를 논하면서 이들의 演行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全文은 다음과 같다.

장차 창고를 열려할 때에는 倉村에 榜을 붙여 雜流를 엄금하도록 해야 한다.

창촌에서 금해야 할 것은 첫째는 우과(優婆: 방언에는 술堂이라 한다-原主)요 둘째는 창기(娼妓: 늙은 退妓도 금할 것-原主)요 세째는 주과(酒婆: 소주나 약주를 앉아서 파는 자-原主)요 네째는 화랑(花郎: 즉 무당의 지아비인 데 방언에는 광대라 한다-原主)이요 다섯째는 악공(樂工: 거문고타고 피리불고 노래하는 사람이다-原主)이요 여섯째는 굴뢰자(窟癩子: 방언에 초라나라 한다)요 일곱째는 마조(馬吊: 곧 투전이다-原主)요 여덟째는 도사(屠肆: 소잡고 돼지잡는 일 따위-原主)이다. 무릇 이들 잡류는 노래와 여색과 술과 고기의 만가지로써 유혹하므로, 창리(倉吏)가 이에 빠지고 뱃사람이 빠진다. 그 소비가 이미 넘치고 탐욕이 깊어지면 횡포하게 거두어 들여 그 축난 것을 채우려 하니 이는 반드시 엄금할 것이다.

(《牧民心書》〈戶典〉稅法 下)

- 27) 俳優之戲 傀儡之技 儼樂募緣 妖言賣術者 並禁之

南方吏校 奢濫成風 每春夏黠宕 卽俳優滑稽之演(方言云德談) 窟樞棚竿之戲(方言集蘭伊 亦名山臺) 窮晝達夜 以爲娛樂 牧 不唯不禁 時亦引入於法庭 甚至衙營 垂簾聽其淫褻 大非禮也 以茲示民 民罔不溺 士女奔波 荒淫無度 倉通稅竊 多由此種 牧 宜榜諭下民 使此雜類 毋納四境之內 庶乎民風其靜矣 (《牧民心書》〈刑典〉禁暴)

때가 되면 배우의 익살(우리 말에 德談이라 한다. 一原主)과 굴뚝봉간(窟棚棚竿)의 놀이(우리 말에 焦蘭伊 또는 山臺라고도 한다. 一原主)로 밤과 낮을 이어서 즐기 고 있다. 수령은 이를 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관청(官廳)에까지 끌어 들이고 심지어는 그 내아(內衙)의 부녀자들까지 발을 드리우고 그 상스러운 장난을 구경하니 예법에 크게 어긋난다. 이런 일을 백성들이 보니 여기에 빠지지 않는 자가 없어 남녀 할 것 없이 들떠 방탕하며 절도가 없게 되므로 창곡을 포획지고 세(稅)를 도둑질하는 일의 대부분이 이 때문에 생긴다. 수령은 마땅히 방을 붙여 하민(下民)이 알아듣도록 일러줌으로써 이러한 잡류가 고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아마도 백성들의 풍기는 안정될 것이다.²⁷⁾

이와 함께 郷吏 등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中央의 京衙前 등이 儺禮의 자리 등을 빈번히 마련하여 遊戲함으로써 폐해가 빚어진다는 기록도 주목된다.²⁸⁾ 이러한 일련의 기록은, 조선후기 각 邑의 탈춤이 현재와 같은 양식으로 발전-정착하는 과정에서 천민신분의 流浪 藝能集團의 영향과 함께 郷吏들의 각별한 관심 및 주도적 역할을 想定하여야 한다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黃海道 海州 監營에서 매년 단오절 무렵 각처의 탈놀이패를 초치하여 경연을 베푼 사실을 상기하는 것도 필요하다.²⁹⁾ 監營은 각 郡縣의 郷吏 중에서 차출한 監營吏들로 營房을 구성, 해당 道의 행정업무를 총관하였다.³⁰⁾ 그러므로 海州의 탈춤경연은 곧 黃海道 모든 郡縣 郷吏들의 각별한 관심 위에서 성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조선후기 이후 각 邑에 탈춤이 현재와 같은 양식으로 발전-정착한 일련의 과정은 郷吏들의 주도적인 역할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Ⅲ. 朝鮮後期 邑權의 運營原理와 邑의 祭儀

조선후기 각 郡縣의 郷吏社會는 吏族의 家系分化和 함께 특정 家系들이

28) 《右捕盜廳謄錄》2冊 〈壬寅四月二十七日傳令各江加設軍官〉

29) 徐淵昊, 《黃海道 탈놀이》, p. 26.

30) 拙稿, 「《安東郷孫事蹟通錄》의 刊行과 朝鮮後期の 安東郷吏」『韓國史研究』60 (1988. 3), pp. 123—146.

주도적 위치로 부상하는 변화를 겪었다.³¹⁾ 이와 함께 이들 주도적 家系들은 해당지역의 邑權을 독점-안배하면서, 安逸房과 같은 기구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³²⁾ 다른 군현의 주도적 가계들과도 상호간에 통혼권을 형성하여 깊은 연대관계를 유지하는 등 寡頭的 運營體制를 확립하였다. 요컨대 조선후기의 향리사회는 그 내부구조가 중층적 구조로 轉化한 일련의 변동을 겪은 것이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의 邑權은 본질적으로 鄉吏 조직에 부여된 위세 및 역할을 통하여 행사된다는 점에서 조선전기와 다를 것이 없다.³⁴⁾ 조선시대 향리조직은 三公兄을 수반으로 운영되었다. 요컨대 戶長과 吏房 그리고 이들 외에 郡縣에 따라 각기 중요하다고 인정된 또 하나의 吏任을 합친 公兄 3人을 수반으로 한 三公兄 중심의 운영체제는 조선시대 향리제도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를 보여준다.³⁵⁾ 이 가운데 戶長과 吏房은 가장 중요한 吏任으로서, 주도적 家系들의 邑權 행사도 바로 이 職任을 독점-안배하여 세습하는 구도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조선후기 三公兄 가운데 吏房은 흔히 '首吏'라고 지칭할 정도로 중요한 職任이다. 吏房은 해당 군현의 모든 행정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守令은 吏房으로 하여금 중앙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되어있었다. 丁若鏞이 《牧民心書》에서

31) 拙稿, 「彰忠祠의 건립과 居昌 愼氏 吏族」 『東亞研究』 4 (1984. 9)

32) 拙稿, 「朝鮮後期 慶州의 鄉吏와 安逸房」

33) 拙稿, 「《居昌 愼氏 世譜》의 간행과 鄉吏派의 編入」 『白山學報』 33 (1986. 12), pp. 201-222.

34) 鄉村社會에서 鄉吏들의 영향력이나 威勢는 흔히 邑權으로 통칭되었다. 이것은 鄉吏들이 官衙가 위치한 邑內에 世居한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 믿어지며, 鄉權과 對比되는 개념이다. 그 구체적인 용례를 한가지만 摘示하면 다음과 같다.

(上略) 吾問與廉曰 所謂金在益 何如人也 與廉曰 在益 本是鄉吏中有權力云云矣 伊後 吾問於鄭述益曰 汝本文化人則 邑吏金在益 想當親知其爲人 何如乎 述益曰 本縣吏 果有在益爲名者 而素有邑權 毋論邑村 無人不知 而吾則 雖無接語 亦熟知其面目 其子 亦爲吏役 而名是煜也

(《左捕盜廳臚錄》 8冊 咸豐元年十月十八日)

吏房은 권한이 크니 지나치게 믿고 중용할 수 없으며, 또한 너무 자주 부를 수도 없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주어 백성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³⁶⁾

라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요컨대 吏房은 守令의 命을 받아 中央政府의 시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한편 戶長의 경우, 吏房과 함께 公兄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吏房의 업무와는 대조적으로 그가 分掌한 행정실무의 성격이나 비중은 보잘 것 없다. 관아에 필요한 땀감을 마련하여 이를 관아의 각 부서에 分給하고 奴婢案을 관장하는 것 등이 고작이다. 재정이나 인사와 관련한 비중있는 역할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어느 郡縣도 동일하였다.³⁷⁾

이렇듯 戶長은 행정실무에 관한한 이해나 권리와는 거리가 먼 직임이지만, 해당 郡縣의 民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수령과 郡縣民을 대표하여 조정의 正朝儀禮에 參賀하고³⁸⁾ 수령이 자리를 비울 때는 戶長의 印言을 통하여 행정실무가 이루어진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鄉吏들도 이 직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였다. 英祖 49년(1773)에 嶺南 각 郡縣의 戶長 374인이 모여서 치우개

35) 拙稿, 「《安東鄉孫事蹟通錄》의 刊行과 朝鮮後期の 安東鄉吏」, pp. 102-107.

한편 三公兄 중심의 鄉吏制度의 유래에 대하여는 拙稿인 「高麗中期 鄉吏制度의 變化에 대한 一考察」(『東亞研究』 6, 1985. 10)이 참고된다.

36) 首吏權重 不可偏任 不可數召 有罪必罰 使民無惑

(《牧民心書》〈東典〉東吏)

37) 이러한 사실은 다음 기록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다.

凡各掌色吏 皆有日記 吏房則諸吏出陟之事 戶房則米穀布出納之事 禮房則公私祭享之事 兵房則軍務簽丁之事 厨色則使星支供之事 戶長則柴木水炭之事
(《牧綱》〈各房所掌〉, 《朝鮮民政資料叢書》[驪江出版社, 1987. 3])

이와 함께 현재 남아 있는 각 郡縣의 《邑事例》도 이를 뒷받침한다(《邑誌》3-慶尙道編 ③ [亞細亞文化社, 1987. 5] 참조). 다만 이들 事例에 한결같이 戶長의 分掌 사항을 다른 吏任보다 먼저 기재하여 놓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戶長의 상징적 優位를 그대로 반영한 때문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38) 李樹健, 앞의 글, pp. 70-73.

선을 요구하면서,

이른바 戶長은 民戶의 우두머리로서 한 지방의 標準이 됩니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도장을 만들어 주고, 수령이 사고를 당하면 그 도장을 사용하여 공무를 대신 보도록 합니다. 또한 매해 정월 초하룻날에는 각 지역의 수령은 마치 중국에 聖節使나 冬至使를 조정에서 보내는 것과 같이 戶長을 임금께 보내어 대신 문안드리게 합니다. 先代의 왕 때, 대궐에 들어가 알현하고 政事에 관한 의견을 아뢰는 이가 있을 것 같으면, 吏曹에서 관례에 따라 직첩을 더해주고 官階도 올려주었으니 조정에서 은혜를 베푸는 일 또한 이렇듯 지극하였읍니다. 이로 말미암아 戶長이 된 이는 관직에 있는 것으로 행세를 합니다.³⁹⁾

라고 戶長의 각별한 역할을 역설한 것도 그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戶長이 각 郡縣의 祭儀를 집전하는 주재자라는 사실도 향리집단의 독특한 역할 가운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점이다. 조선시대에는 중앙 집권화 시책의 일환으로 각 군현에 城隍堂과 社稷壇, 厲壇 등을 일률적으로 설치하여 수령이 祭祀하는 儀禮를 마련하였다.⁴⁰⁾ 그렇지만 각 지역에 전래된 자연신 중심의 祭儀가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국가에서 규정한 祭祀와는 별도로 각 郡縣의 내부에는 다양한 형태의 祭儀가 행하여졌다. 村落에는 규모를 달리하는 部落祭가 있었으며, 한편 관아가 위치하여 향리집단이 世居해 온 邑에는 통상 郡縣民 전체를 포괄하는 대규모의 祭儀가 있어 戶長의 주관 아래 거행되었다.⁴¹⁾ 이에 관한 17세기 전반 및 19세기 후반의 사례 두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9) 所謂戶長者 長於民戶 爲一鄉之標準 故自朝家鑄給印信 官司有故則 使用其印代行公事 每歲元朝 各官守令 謹遣戶長 替行問安 如聖節使·冬至使之義也 列聖朝有入侍召對者 自吏曹例加職帖次第陞階 朝家之恩典 亦至矣 以是爲戶長者以官職自處

(《據曹龜鑑》1-24 a 戶長疏)

40) 金泰永, 「朝鮮初期 祀典의 成立에 대하여」 『歷史學報』 58 (1973); 歷史學會編, 《韓國史論文選集》Ⅲ (1976), pp. 14-21.

41) 조선시대 이전의 部落祭에 대하여는 단편적인 기록이 전해진다. 한편 이에 대한 체계적인 첫 조사는 日帝時代に 이르러 이루어졌고, 그 성과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村山智順의 《部落祭》(朝鮮總督府, 1937. 5)의 간행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에도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들 조사는 한결같이 郡縣

- 邑에는 각기 성황당이 있어 봄과 가을에는 제사를 지낸다. 그러나 강릉만은 제사를 지내는 일 외에 유달리 이상스런 일이 있다. 매해 4월 15일이면 이곳 강릉의 時任戶長은 巫覡을 거느리고 대관령 위로 나아간다. 여기에는 神堂이 한칸 있다. 戶長은 신당에 나아가 告由하고 巫覡으로 하여금 나무 사이에서 신령을 구하도록 한다. 나무 하나에 광풍이 불어 나뭇잎이 스스로 흔들리면 '神靈이 내렸다'고 하고 그 나무의 가지 하나를 자른다. 戶長은 건장한 이로 하여금 받들고 가게 하며, 이것을 일컬어 國師神의 행차라 한다. 畫角이 앞에서 인도하고 巫覡들은 정을 치고 북을 두드리며 따른다. 戶長은 大昌驛의 말을 타고 뒤를 밟아 천천히 간다. 길에는 이를 보려는 자가 담과 같이 늘어 서 있어, 혹은 紙布를 찢어 神木에 건다거나 혹은 술과 안주로 巫覡을 위로한다. 어두워 걸 무렵에 관아에 도착하면 햇불이 들판에 펼쳐있고 관가의 노비들은 공손히 마중나와 성황당에 이를 안치한다. 5월 5일이 되면 巫覡등이 각 색의 비단을 모아 고기비늘과 같이 이어 붙여 다섯 색채의 찬란한 것을, 마치 우산처럼 장대에 걸어 놓고 이름을 써서 덮개로 만들고는, 힘센 이로 하여금 이를 받들고 앞서 가도록 한다. 巫覡등이 풍악을 울리며 따르고, 倡優의 무리는 雜戲를 한다. 하루가 끝나면 성의 남문으로 나아가 소학전에 도착하여 마친다. 한편 대관령 위에서 받들어 온 神木은 그 다음날 성황당에서 불사른다. 강릉읍의 습속에는 이 같은 일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며 그 유래는 이미 오래되었다. 만약 이것을 치르지 않으면 비바람이 곡식을 손상하고 금수는 해를 끼친다고 한다.⁴²⁾

- 女圓舞記 一 慈仁縣에는 一韓廟가 있어서 매해 단오날에는 女圓舞를 추는데 이의 중심지인 邑에서 행한 祭儀와 村에서 행한 것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그 결과 조선시대 이전의 邑의 祭儀의 특징을 고찰하는데 이러한 조사보고를 이용하기 어렵다. 현전하는 대규모의 祭儀나 민속예술의 대부분이 邑에서 거행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邑과 村의 祭儀를 나누어 그 차이점을 소급하여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 42) 邑各有城隍祠 春秋享祀之 至於江陵則 享祀外別有異者 每年四月十五日 本府時任戶長 領率巫覡 詣大關嶺上 有神祀一間 戶長就神堂 告由 令巫覡求神靈於樹木間 有一木神靈颯然枝葉自搖 乃曰 神靈之所依 斫其一枝 令健壯者奉持 謂之國師行次 畫角前導 巫覡鳴金擊鼓而隨之 戶長騎大昌驛馬 踵後徐行 道路觀者如堵 或以紙布 裂掛神木 或以酒饌 勞慰巫覡 乘昏到官 燎火遍野 官隸祇迎 歸安于城隍祠 至五月五日 巫覡等 聚各色錦緞 鱗次連幅 五彩燦爛 掛長竿如傘 垂名以爲蓋 令力健者奉之以前行 巫覡等作樂隨之 倡優輩進雜戲 盡日出城南門 到集鶴川而罷 嶺上奉來神木則 以其翌日燒火干城隍祠 此邑習俗以爲常 其來已久 不然則 風雨損稼 禽獸害物云云

(《臨瀛誌》風俗)

는 韓將軍으로부터 유래했다고 한다. (중략) 邑人들은 자인현 서쪽의 산기슭에 神堂을 세워놓고, 매해 단오날에는 女圓舞를 본 따 두 사내아이로 하여금 여 자옷을 입고 花冠을 쓰도록 한 후 춤을 추게 하며, 또한 배우들의 雜戲도 베풀다. 악기를 울리고 북을 치며 깃발에는 獐山司命이라고 적는다. 獐山은 慶山을 신라시대에 일컫던 옛 지명이니, 아마도 이것은 자인현이 獐山에 속하던 매일 것이다. 縣官은 祝文에 이름을 적으며 戶長은 紗帽와 작미를 하고 祭를 올린다.⁴³⁾

위의 글에 의하면 江陵의 端午祭나 慈仁縣의 韓將軍祭는 바로 戶長이 주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이 戶長이 주재하는 邑의 祭儀는 이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郡縣民이 참여할 정도로 대규모인 경우가 적지 않으며,⁴⁴⁾ 이것은 다른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⁴⁵⁾

- 43) 女圓舞記 — 慈仁縣有一韓廟 以每年五月五日 設女圓之舞 蓋出於韓將軍云(中略) 邑人 建神堂於縣西麓 每以端午日 象女圓之舞 使童男二人粧女服戴花冠而舞之 又設俳優雜戲 鳴金擊鼓 標其旗曰 獐山司命 獐山即慶山之羅代舊號 似是本縣屬獐山時也 縣官署名於祝 戶長着帽帶以祭之
(《玉山文牒抄》, 《韓國地方史料叢書》7 [驪江出版社], pp. 557—559)

- 44) 江陵의 端午祭나 慈仁縣의 韓將軍祭 등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행사의 규모도 매우 크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이 참조된다.

○ 金善豐·李基遠, 「民間信仰」《한국민속종합보고서》8—강원편—(文化財管理局, 1977. 7), pp. 116—125.

○ 金宅圭, 《韓國農耕歲時期的 研究》(嶺南大出版部, 1985. 5), pp. 265—274.

- 45) 한편 조선시대 各 邑의 祭儀에 관한 기록 중에 이를 주관한 책임자가 首吏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곧 戶長을 지칭한다. 다음의 豊基, 靑安, 軍威의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 豊基俗 上元日 邑首吏 倒騎黑牛 抱琴而入衙庭 拜于官 擊日傘而出 未知何意 而必是祈福之事也

(《東國歲時記》正月 上元)

● 靑安俗 三月初 縣首吏 率邑人 迎國師神夫婦於東面長鴨山上大樹 入于邑內 用巫覡 具酒食 鉦鼓喧轟 行神祀於縣衙及各廳 至廿餘日後 還其神於樹 而間二年行之

(위의 책, 三月 月內)

● 數樹春陰裏 并川川名去自閑
赤羅本縣傳舊俗古號 白竹本縣徐思遠女 嫁纔一年 夫死 常就堂後竹林 抱竹呼 忽生白竹三叢 世宗命圖竹 老何山
物色頻傷目 行程欲減顏
角于遣化遠 古廟盡常關
角于金庚信祠 在孝靈縣西岳 俗稱三將軍堂
每歲端午 首吏 率邑人 以鞀鼓旗 迎神遊干村巷云

이와 함께 郡縣 단위의 春耕祭儀를 바로 戶長이 주관한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金海府와 濟州의 실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 金海府에서는 立春日에 春耕祭를 치른다. 그 법은 본래 《禮記》月令 中の 東郊에서 봄을 맞이한다는 뜻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일찌기 金海府의 立春日을 보니, 府司에서는 나무로 소를 만들고 戶長은 公服을 갖추어 입은 다음 정을 울리며 앞에서 인도하여 동쪽 성문 밖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迎春場 내에서 神農氏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끝낸 후 나무 소를 밀면서 땅을 경작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⁴⁶⁾
- 每年 立春前 一日에 全道 巫覡을 州司에 集合하고 木牛를 造成하여서 祭祀하며 翌朝에 戶長이 머리에 桂冠을 쓰고 몸에 黑團領禮服을 입고 出動하여 木牛에 農械를 갖추고 巫覡輩는 紅團領彩服을 입고 巫覡이 木牛를 끌고 前路에는 六律을 갖추고 뒤에는 童妓로 護從하며 정, 팡매기, 巫樂器等을 울리며 戶長을 護衛하여 觀德亭에 이르면, 戶長이 巫覡輩를 間間집에 派遣하여 儲置한 穀倉束을 뽑아오게 하고 뽑은 바 實否를 보아서 新年的 豐歉을 징험하며 또 그 모양으로 客舍에 이르러 戶長과 巫覡이 現身하고 東軒에 이르러 戶長이 강기와 답이를 잡고 와서 발을 갈면 한 사람은 赤色假面에 긴 수염을 달아 農夫로 꾸미고 五穀을 뿌리며 또 한 사람은 色羽로서 새와 같이 꾸미고 주어먹는 형상을 하면 또 한 사람은 獵夫를 꾸미어 色鳥를 쏘는 것과 같이 하고 또 두 사람은 假面하여 男優로 꾸미고 妻妾이 서로 싸우는 형상을 하면 또 한 사람은 假面하여 男優로 꾸미고 妻妾이 투기하는 것을 調停하는 모양을 하면 牧使는 座에 앉아서 酒와 煙草를 많이 주며 與民同樂之風을 보인다. 觀光者는 다 웃고 또 本官衙에 이르러서도 또 그와 같이 하면 假飾한 사람들은 英雄豪傑같이 보인다. 戶長은 물너가고 巫覡輩는 集合一隊에 糶糶倉에 들어 뛰놀며 어지러이 춤추고 淸淸한 목소리로 年豐의 呪文을 외우며 泰平을 즐기고 散會한다.⁴⁷⁾

(《右遊記》—이 詩集은 19세기 중엽의 필사본으로 실제로 목격한 사실을 토대로 쓰여진 것이다. 소장자인 釜山大 柳鐸—敎授의 도움으로 참고하였다.)

위에 摘示한 기록은 각 郡縣의 邑의 祭儀를 戶長이 주관하는 관례가 모든 郡縣의 공통현상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 46) 州府立春日 爲春耕祭 其法 本出月令迎春東郊之意 嘗見本府立春日 府司造木牛 府戶長具公服 鑼吹前導 出東城門外 迎春場內 祭先農訖 推牛作耕地狀 (李學遠, 《東事日知》〈春耕制〉, 《洛下生全集》下〔亞細亞文化社〕)

- 47) 金斗奉, 《濟州道實記》(大阪, 1936), p. 21.

이와 함께 永川의 다음 事例도 戶長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렇듯 戶長이 春耕祭儀를 主宰한 사실은, 이것이 해당 郡縣民을 대표하여 모범을 보인다는 맥락에서 戶長의 또 다른 역할을 잘 반영한다. 더우기 戶長의 위와 같은 역할을, 조선후기 향리들이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을 펼칠 때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역설한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鄉吏集團은 고려말 이후 士族들의 지방 정착과 함께 국가의 행정실무를 수행하는 지위로 점차 하강하였다.⁴⁸⁾ 그러나 고려시대 이래 해당 郡縣의 民을 대표한다는 상징적 의미는 戶長의 직임을 통하여 계승되어 온 것이다. 요컨대 조선시대의 邑權은 중앙정부의 명을 받아 郡縣民에 대하여 이를 집행해야 한다는 원리와 소속 郡縣民의 이해와 안건을 중앙정부에 대변해야 한다는 원리, 이 두 원리가 형평을 유지한 위에 성립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⁴⁹⁾ 그리고 吏房과 戶長은 바로 이같이 상반된 양면적 역

除夕次景龍韵

簾外層櫺忽到青

多至以竹管盛穀種 埋地中 除日出視之

吏呈潤種談農老 以種之潤不潤 驗某月雨旱 戶長成狀報

岩邑幸逢聯鼎暇

官厨易足人難見

蕉史

(《南遊記》—柳鐸—敎授 소장)

占穀儀禮에 대한 이 기록은, 이것이 郡縣의 豊凶을 예견하는 역할을 戶長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戶長의 상징적 역할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48) ○李成茂, 「朝鮮初期의 鄉吏」 『韓國史研究』 5 (1970. 3)

○北村秀人, 「高麗末・李朝初期의 鄉吏」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3 (1976. 3)

49) 鄉村社會에 있어서 鄉吏들의 位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조선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다고 할 수 있다. 丁若鏞이 '백성은 토지로써 생업을 삼지만 아전들은 백성으로써 생업을 삼는다'라고 한 옥평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언사로 꼽히고 있으려니와 《牧民心書》 《吏典》 《東吏》, 그 같은 부정적인 시각은 지금까지 별다른 검토없이 반복-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 것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李鍾恒, 「鄉吏制度의 變遷과 腐敗에 관한 考察」 『論文集』 7, (慶北大, 1963) 및 申解淳, 「朝鮮時代 胥吏의 作弊에 대하여」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正音文化社, 1985. 12)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매우 단순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야 한다. 오히려 구한말에 선교사로 온 Homer B. Hulbert의 다음과 같은 논평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아전은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과오에 대한 속죄양이며, 汽罐室의 폭발을 막아주는 안전판의 구실을 한다. (中略) 만약 그들이 일반적으로 묘사되

할을 각기 대표하는 직임이며, 邑權은 이 두 역할이 동시에 상호작용함으로써 존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郷吏集團에게 소속 군현민을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이 부여되었더라도, 신분적인 면에서 이들은 민중들과 뚜렷히 구분되는 집단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집행한 邑의 祭儀가 자신들의 존립기반인 郡縣民과의 연대 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독특한 이해를 투영하는 場인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靈山邑의 이른바 ‘文戶長 祭儀’와 관련된 다음 逸話는 이를 잘 반영한다.

文禮熙는 靈山の 郷吏로서 임진왜란 때 軍功을 세워 특별히 郷役을 면제받았다. 아들인 戶長 文得化는 재주와 도량이 남과 달랐다. 천문과 遁甲도 모두 분명하게 터득했다. 집이 邑의 남쪽 留民山 아래 있었는데 밤에는 꼭 호랑이를 타고 다녔다. 잘못하여 어사에게 발각되어 거둬 추궁을 당하였다. 文得化는 탄식하면서 ‘아무 죄도 없는데 벌을 받느니 차라리 피하여 벌을 면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면서 首奴를 데리고 靈鷲山으로 들어가서 幻身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首吏의 꿈에 나타나 산 위에 祠堂을 세우고, 5월 5일에 경건하게 齋戒하여 祭祀를 치루며 祭需는 官에서 대외 일을 치루는데 있어 不精하면 화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순조 14년(1814)에 현감인 鄭耕愚가 이것을 요사스럽고 허황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금지시켰다. 그러자 한달 안에 관아 내의 11인이 죽으므로 두려운 나머지 처음같이 제사를 지냈다.⁵⁰⁾

는 것의 반 정도라도 악덕한 무리들이라면 그들은 오래 전에 국민들에 의하여 축출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제각기 자기의 고장에 불박이가 되어 만약 국민들의 인심을 잃게 되면 새로운 골발으로 방북될 수가 없고 오랫동안 그 후환을 겪어야만 한다. 그들의 가족과 재산은 그 지역의 불모가 되는 것이며 그들의 일상생활은 주민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方伯 守令 사이의 緩衝制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方伯 守令의 탐욕을 억제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어루만져야 한다. (Homer B. Hulbert, *The Passing of Korea* [Doubleday Page and Co., New York: 1906]; 申福龍譯, 《大韓帝國史序說》[探求堂, 1974], p. 63)

이 같은 평가는 당대 사회구조와 관련하여 郷吏制度의 역할과 특성을 잘 파악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Hulbert가 ‘한국 국민들이 그토록 심한 억압과 失意 속에 살면서도 정치제도만은 수세기 동안을 꾸준히 결속시켜올 수 있던 것은 오로지 아전제도 덕분이다’라고까지 적극적인 평가를 내린 사실도(위의 책, p. 62) 이 집단의 역할을 깊이 이해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되는 것이다.

- 50) 文禮熙靈山吏 壬辰亂以軍功特賜免鄉 子戶長得化 才局異凡 星曆奇遁 亦略旁通 家在邑南留民山下 夜必騎虎而行 誤爲御史所摘 當重究 得化嘆曰 無辜當刑

이 기록은 靈山 官衙에서 祭需까지 分給하면서 치러온 ‘文戶長 祭儀’를 수령이 중지시키자 그 재해가 곧 관아의 衙前들로 직결되어 이를 再開한 사실을 전한다. 지금도 존속한 ‘文戶長 祭儀’는 靈山縣民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祭儀이며,⁵¹⁾ 이 사례는 邑을 중심으로 한 祭儀가 이를 주재한 鄉吏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 위에서 수행되어 온 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刀筆吏로부터 將相에 올라 조선후기 鄉吏들이 자신들의 모범으로서 숭앙한 漢나라 創業功臣 蕭何의 圖像이, 尙州邑의 祭儀에 숭배대상으로 등장한 사실도 주목된다. 이것은 邑의 祭儀가 鄉吏들의 각별한 이해 위에서 이루어진 좋은 실례라고 생각된다.⁵²⁾

조선후기 이후 탈춤은 이렇듯 戶長이 주재한 邑의 祭儀를 배경으로 발전하였다. 민중과의 공감대를 보다 확장할 수 있는 탈춤이 각별히 조선후기 이후 발전한 것은, 이 시기에 들어 鄉吏集團이 민중과의 사회적 관계를 또 다른 차원에서 인식해야 하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Ⅳ. 朝鮮後期 탈춤의 演行 背景과 社會的 機能

조선후기 이후 鄉吏集團은 자신들의 존립기반을 침식하는 다양한 형태의 변화에 부딪히고 있었다. 士族 중심의 사회에서 性理學에 입각한 사회 규범이 기층사회까지 정착하면서 이것은 鄉吏集團의 존재가치를 이념면에서 철저히 부정하는 결과를 빚어냈다. 士·農·工·商으로 위계질서를 想定한 유교이념에는 원래 鄉吏들의 존재 근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공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 같은 이념은 奉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한

不若避免 與首奴 入靈鷲山 幻身不反 其後夢見於首吏 告以立祠山上 以五月五日 庚子設祭 官給需 行之如有不精則 立見禍害 純宗甲戌 鄭侯耕愚 以爲妖誕而禁之 一朔內 見衙內十一人死亡 畏而行祭如初

(《據曹龜鑑續編》 1-21a)

51) 이보형, 「영산쇠머리대기와 영산줄다리기」 『문예진흥』 92 (1984. 4)

52)拙稿, 「尙州의 戶長·吏房 명단과 蕭何의 圖像」 『釜山史學』 11 (1986. 9), pp. 128-130.

郷吏들의 불법과 부정으로 말미암아 매우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녹봉지급을 제도화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생겨날 수 밖에 없다고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郷吏集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오히려 확산되어 갔다. 郷吏들이 ‘곧고 아끼며 공손하고 화합하는 것을(貞·齋·謹·和) 잃어버린 무리’라는 李學遼의 비판은 이를 잘 보여준다.⁵³⁾

조선왕조는 통치방식의 하나로서 사회적·신분적 위계질서의 준수를 강조하였다. 그 일환으로 郷吏集團의 세습과 함께 지방행정 실무를 이들에게 의존하였다. 그러면서도 결코 이들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 조선후기의 현실이었다. 이것은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표면화되었다. 조선후기 이후 중앙정부와 牧民書들이 지방통치의 요체로서 郷吏集團의 간악함을 경계할 것을 끊임없이 내세운 사실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누구나 吏胥를 말할 때면 반드시 간악하다는 것과 연관지어 ‘간악한 아전이다. 또는 아전은 간악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간악하지 않다면 아전으로 생각할 수 없고 아전이라면 간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수령은 사람의 도리로써 대해서는 안되며, 단지 분명히 살피 감독하는 것으로 그치고 엄한 법으로써 이들을 다스려야 할 뿐이다’라고 한다.⁵⁴⁾

라는 기록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다. 郷吏集團에게는 민중과의 신분적 위계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앙정부의 권위가 중요한 배경이 되어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양상은 이들 집단이 민중과 종래의 사회적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와 함께 郷吏集團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든 또 다른 상황은 민중에

53) 我國謂縣胥屬曰 衙前 頭仕曰 首尊 主持黜陟曰 上詔 次曰 記官 所居處曰 作廳 其凡操牙籌挾毛錐 皆明達練習者也 守聽縣者 舉邑巨細事 悉委之 而方拄手板 視西山雍容黃紬閑 悉此人力也 然嘗論之此人之失有四曰 不貞不審不謹不和

(李學遼, 《因樹屋集》〈贈襄生致逸序〉, 《洛下生全集》上)

54) 人之言吏胥者 必兼奸而稱之曰 奸吏也 吏奸也 而其言曰 不奸則 不可以爲吏 爲吏則 不得以不奸 爲官者 不可以人理畜之 但明察而戰之 嚴法而繩之而已 (《管城錄》〈作廳揭壁文〉, 《韓國地方史資料叢書》6 [國江出版社], p. 395)

대한 지배양식의 변화에서 파생한 문제이다. 지배양식의 변화는 조선후기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진전되었다. 인구의 증가 추세에 상응하여 요역의 동원방식이 달라지고,⁵⁵⁾ 병작제의 발전과 함께 도조법 등이 널리 시행되는 일련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양상은 기본적으로 민중들에 대한 인신 지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⁵⁶⁾ 신분적 위계질서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을 견지하여 온 鄕吏集團은 이제 민중을 상대로 한 봉역 수행의 어려움에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어려움은 향촌사회의 분화와 함께 제기된 새로운 문제로 말미암아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었다. 농업생산력이 인구의 증가에 따르지 못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이것이 유통경제의 발전과 연결되면서 鄕村社會의 분화를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수렴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富를 축적하여 새로운 지위나 역할을 기대하는 부류가 나타났고, 향리집단은 이전의 신분적 권위만으로는 이들을 상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함께 鄕吏들의 입장을 더욱 악화시킨 또 다른 양상도 빼놓을 수 없다. 18세기 중엽 이후 중앙정부의 재정이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지방재정이 파탄 직전에 이른 것이 바로 그것이다.⁵⁷⁾ 均役法을 포함한 여러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은 민중들에게 전가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집행해야 하는 향리집단은 엄청난 逋欠을 지니면서도⁵⁸⁾ 민중들에게

55) ○ Tony Michell, Fact and Hypothesis in Yi Dynasty Economic History: The Demographic Dimension, *Korean Studies Forum* 6 (Winter Spring 1979-1980)

○ 尹用出, 「17·18 세기의 役夫募立制의 成立과 展開」 『韓國史論』 8 (서울大國史學科, 1982)

56) ○ 宋贊植, 「朝鮮後期 農業에 있어서의 廣作運動」 《李海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70); 《韓國史論文選集》 IV (一潮閣, 1976)

○ 金容燮, 「朝鮮後期 經營型 富農과 商業의 農業」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I (一潮閣, 1971)

○ 安秉珪, 《朝鮮近代經濟史研究》 (日本評論社, 1975); 《韓國近代經濟와 日本帝國主義》 (백산서당, 1982.10)

는 단지 수탈자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비칠 수 밖에 없었다. 향촌사회에 팽배한 불만은 잠재적이었으나 언제라도 향리집단으로 집중될 수 있었다.⁵⁹⁾ 이렇듯 조선후기 이후 진행된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동은 향리집단과 민중과의 관계를 불안정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郷吏集團의 대응방식은 조선왕조의 체제와 통치본질 자체로 말미암아 그 선택의 폭이 제한되었다. 士族 중심의 鄉村社會에서 다양한 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위세는 결코 이들에게 부여되지 않았

57) 安達義博, 「18~19世紀前半の大岡米・木・布・錢の徵收・支出と國家財政」『朝鮮史研究會論文集』13 (1976.3)

58) 張東杓, 「19세기 전반기 吏胥層의 中間通欠과 地方財政」『釜大史學』10 (1986.6)

59) 鄉村社會에 있어서 郷吏들에 대한 적대감을 담은 다음 歌辭에는 그 같은 분위기가 잘 반영되어 있다. 이 歌辭는 대략 19세기 전반기의 것으로 믿어지는 〈居昌歌〉인데, 여기에는 그 중 일부를 摘示하였다.

엇지타	우리居昌, 邑運니	不幸키여.
一攪니	塗炭키고, 萬民니	俱渴리라.
堯舜의	聖德으로, 四凶니	이셔시며.
齊威王의	明鑑으로, 何大夫가	니단말가.
日月리	말가시되, 伏盆의	難照키고.
陽春의	布德닌들, 陰崖의	밋출손나.
李在稼	언인지며, 저지가	어인지고.
居昌니	廢昌되고, 在稼가	亡稼로다.
諸吏가	奸吏되고, 太守가	怨讎로다.
冊房니	取謗키고, 進士가	多事키다.
(一弊)	吏奴通 萬餘石을, 百姓니	무삼권고.
四義式	分給키고, 全石으로	부치너니.
數千石	通欠衙前, 먹친개	안니치고.
斗升穀	물이장코, 百姓만	물너너니.
大典通篇	條目中의, 이런法니	잇단말가.
(二弊)	二千四百 放債錢니, 이도또호	吏通어든.
結卜의	부쳐너야, 民間의	冤徵키니.
王稅가	所重커든, 么麼호	衙前通欠.
奉命호	王臣으로, 任憲로	作奸호다.
戶數도	百姓니라, 또다시	冤徵시겨.
衙前通欠	收殺키니, 非但今年	弊端이라.
明年가고	又明年의, 每千年	弊端닌나.

(《居昌歌》, 서강대-청구번호: 古書 거 811)

던 것이다 결국 이들의 선택은, 鄉村社會의 분화를 피할 수 없는 추세로 인정하고 分化의 과정에서 富를 축적하여 새롭게 부상한 부류 등을 대상으로 보호 종속관계를 맺어 상호이해를 도모한다는 현실론으로의 낙착이었다. 조선 후기 이후 광범위하게 증가한 避役현상과 더불어 契房이나 保率 등으로 말미암아 鄉吏集團을 養戶의 한 주체로 일컫게 된 일련의 변화는 곧 이러한 '共濟'의 논리 위에 성립하였다.⁶⁰⁾ 신분적 위계질서를 준수하면서 일면 상호 간의 이해교환을 전제로 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정립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었다. 이해 교환을 전제로 한 '共濟'의 논리가 적정 한도를 넘어설 때 신분적 위계질서의 준수는 어려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⁶¹⁾ 양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고 이로부터 빚어진 긴장을 조정해야 하는 새로운 노력은 이러한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한편 이 같은 특정부류에 대한 향리집단의 보호-종속관계의 설정은 여기에서 소외된 부류들로부터는 광범위한 불만을 야기시켰으며, 이러한 적대감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도 안겨주었다.

조선 후기 이후 탈춤은 이러한 이해 위에서 정착-연행될 수 있었다. 탈

60) 조선 후기 이후 軍政의 폐단과 관련하여 鄉吏들의 契房이나 保率로 인한 避役이 큰 문제로서 등장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사회의 큰 문제로 등장한 養戶의 주체로서 흔히 鄉吏가 거론된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金甲周, 「朝鮮後期の 養戶」『歷史學報』85-86〔1980〕). 이것은 '猶舊則 實以肥己 奸民則 利其役歟'《備邊司謄錄》憲宗 元年 9月 28日)이라고 지적된 바와 같이 양자의 상호 이해의 교환을 전제로 확산되어 갔다고 해야 한다. 鄉吏들이 이 契房을 '結誼不忘之意' 또는 '共濟之誼'《長房完議》甲子 正月日 追錄: 서울대-청구번호: 古大 5-120-85)라고 하여 상호 간의 이해를 도모하는 위에서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61) 이와 관련하여 Hulbert가 목격한 사건 하나를 제시하는 것도 참고가 될 것 같다. 그것은 鄉吏가 商人들로부터 큰 곤욕을 치른 사건인데 그 이유는 觀察使가 商人들에게 돈을 각출하려고 鄉吏를 보냈는데 이 때 鄉吏가 商人들의 입장을 미리 觀察使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觀察使의 요구만을 商人에게 알렸은 때문이라는 것이다(Homer B. Hulbert, 앞의 책, p. 65). 이것은 鄉吏들이 중앙정부와 민중 양자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어느 한쪽의 이해만을 대변하여 恩權의 형평이 깨지면 자신들의 존립기반마저 불안정해진다는 한 사례라는 점에서 鄉吏들의 독특한 역할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춤의 내용이 民談이나 巫俗 등을 통하여 이미 민중들에게 친숙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⁶²⁾ 이러한 탈춤을 향리들이 演行함으로써 여기에 참여한 민중들로 하여금 이 집단과의 연대감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는 場이 된 것이다. 향리집단의 演行은 천민출신의 전문 예능인에 의한 演行과는 또 다른 의미를 민중에게 준 것이다. 요컨대 탈춤은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주재집단의 차이에 따라 이에 참여한 민중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양반집단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나 풍자는, 양반 중심사회에서 빚어진 구조적 모순을 도의시킨 채 그 책임을 향리집단에게 지울 수는 없다는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믿어진다. 세속적 삶의 진솔한 표현은 엄격한 유교규범을 준수하는 생활과는 괴리가 있게 마련인 민중들에게 그들의 생활도 삶의 한 부분으로서 의미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유교적 윤리규범만이 삶의 차등구조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郷吏集團이 직접 演行함으로써, 유교적 모범집단이 아닌 자신들은 양반과는 달리 해당지역 민중들과 공동적인 삶의 지반 위에 있다는 의식을 조장할 수 있었으리라 믿어진다. 그러므로 탈춤의 演行은 郷吏集團에 대한 불만을 잠재적으로 깔고 있는 민중들로 하여금 그들의 적대감도 결국은 커다란 사회적 질서 속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질서 속에서 살아가자면 적대감도 어쩔 수 없이 생겨나게 마련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편 탈춤의 演行과 함께 邑의 祭儀를 戶長이 변함없이 주재한 것 역시 향리집단과 민중과의 불안정한 위계질서를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고 믿어진다.⁶³⁾ 祭儀를 郷吏集團이 主掌함으로써 이들이 郡縣民을 대표한다는 상

62) 金烈圭, 「現實文脈 속의 탈춤」 『震檀學報』 39 (震檀學會, 1975), pp. 174—177.

63) 한편 金烈圭氏는 위의 글에서 가면극을 祭儀와 결부하여 이해함으로써 가면극이 사회적 질서를 정신하기 위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가면극의 현실문맥적인 의미를 파악하였다(金烈圭, 위의 글). 이러한 논의가 演行 집단에 대한 검토없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탈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정적 의미와 역할은 이 절차를 통하여 반복되고 강화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절차는 鄉吏集團이 민중과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는 있지만 양자 사이의 신분적 위계질서는 견도될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 민중들이 새로운 질서로 移行해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방향으로 운용되었다.⁶⁴⁾ 요컨대 조선 후기 이후 鄉吏集團의 주도 아래 발전한 탈춤은 의례화된 반란ritualized rebellion으로서 演行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조선 후기 이후 판소리의 발전도 탈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鄉吏集團의 주도적인 역할 아래 이루어진 사실을 상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판소리를 集大成한 申在孝가 高敞縣의 吏房이라는 점도 그 한 예이려니와 全州 鄉吏들로 구성된 全州府 通引廳과 全羅道 各郡縣에서 差出된 鄉吏들로 구성된 全羅道 監營의 通引廳에 의하여 全州大私習이 성립·발전한 사실은,⁶⁵⁾ 黃海道 海州 監營에서의 탈춤경연과 마찬가지로 판소리의 발전도 鄉吏集團의 주도적 역할을 상정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판소리 및 탈춤이 민중과 공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하더라도 조선 후기 이후 판소리 및 탈춤의 발전을 민중 예술의 발전으로 단순히 규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한국사의 서술에 있어서 판소리 및 탈춤의 발전은 조선 후기 鄉吏文化의 발전이라는 범주 위에서 그 位相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 후기 각 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탈춤의 발전을 향리집단

64) 이와 관련하여 祭儀의 사회적 기능을 논의한 Max Gluckman의 가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Gluckman은 祭儀가 역할의 분화가 상대적으로 덜된 사회에서 혼동되고 중복되려는 경향을 지닌 일상생활에서의 역할을 구분짓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Max Gluckman, *Politics, Law and Ritual in Tribal Society*, Chicago, 1965). 이 같은 가설은 향리집단과 민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분과 역할이 혼동되는 변화가 일어난 조선 후기의 상황에 대입시킨다고 할 때 향리집단이 주재한 邑의 祭儀에 일면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5) 홍현식, 「전주대 사습」 『음악동아』 (東亞日報社, 1983. 7), pp. 175-180.

의 존재형태 및 동향과 관련하여 그 특성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이제 본문을 요약하여 이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첫째, 탈춤의 형성과 관련하여 탈춤이 현재와 같은 양식으로 각 邑에서 발전·성립한 일련의 변화는 조선후기 이후 일어났으며, 이를 주도한 주체는 곧 향리집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邑에서 전승되어온 雜戱를 토대로 현재와 같은 양식의 탈춤을 발전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 流浪藝人集團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둘째, 탈춤은 邑의 祭儀를 배경으로 발전하였는데, 邑의 祭儀는 邑權의 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였다. 邑權은 중앙정부와 군현민 양자의 이해를 조정하고 중재하여 형평을 유지하는 위에서 성립하였으며, 향리조직의 首班인 吏房과 戶長은 각기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직임이었다. 그리고 邑의 祭儀는 바로 군현민과 향리집단의 유대를 강조하는 역할을 맡은 戶長이 주재하였고, 여기에는 일면 향리집단의 이해가 강력히 투영되었다.

셋째, 祭儀를 배경으로 한 탈춤의 발전은 조선후기 이후 향리집단이 향촌사회에 있어서 민중과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상응하려는 현실 대응방식의 한 표현이라고 간주하였다. 조선후기의 일련의 사회변동은 향리의 민중에 대한 인식지배를 약화시켰고 이는 이전의 신분적 위계질서에 기초한 향리들의 존립기반을 침식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 같은 현실에 직면한 향리들은 민중 가운데 새로운 지위나 역할을 기대하는 부류를 대상으로 신분적 위계질서를 준수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이해 교환을 전제로 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양자 간의 형평을 유지하기에는 이러한 새로운 관계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하였으며, 나아가 여기에서 제외된 부류들의 향리집단에 대한 불만은 잠재적이기는 했으나 확산되어 나갔다. 탈춤의 발전은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한 향리들의 현실 대응 방식의 한 표현이었다. 탈춤은 민중과의 유대관계를 강조하면서 이 것이 祭儀를 배경으로 演行됨으로써 양자 사이의 위계질서는 전도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場이 된 것이다. 요컨대 조선후기 이후 향

리집단이 주도한 탈춤은 의례화된 반란으로서 연행된 것이다.

끝으로 조선후기 판소리의 발전과 관련한 향리들의 주도적 역할도 아울러 想定할 때 탈춤을 포함한 판소리의 발전은 조선후기 향리문화의 발전이라는 범주 위에서 그 역사적 의의와 예술적 특성을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다.